서비스 및 투자 부속서

부속서 I 과테말라의 유보목록

주해

- 1. 이 부속서의 과테말라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과테말라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4조(시장접근)
 - 라. 제10.5조(현지주재)
 -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제3항에서 규정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다.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범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범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 4.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리고 제9.13조제1항다호 및 제10.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 5. 과테말라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취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범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24-99호, 토지기금법(Ley del Fondo de Tierras) 및
	그 개정 제20조
	토지기금관리위원회 결의 제41-2011호(Punto Resolutivo
	No. 41-2011 of the Consejo Directivo del Fondo de
	Tierras), 토지기금의 토지 접근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규정(Reglamento de Beneficiarios y Beneficiarias del
	Programa de Acceso a la Tierra del Fondo de Tierras)
	제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 출신의 과테말라인만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접근하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2.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49-79호, 추가권리증서법(Ley de Titulaci ó n
	Supletoria) 제3조
유보내용	<u>투자</u>
	과테말라인만이 국경 및 해안선에서 15킬로미터 내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추가권리증서(titulaci ó n supletoria)를 취득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경우, 그 법인을 구성하는 인들은 모두
	과테말라인이어야 한다.

3.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과테말라 공화국 헌법(Constituci ó n Política de la Rep ú blica
	de Guatemala) 제122조
	법령 제126-97호, 과테말라 영토보호구역 규제법(Ley
	Reguladora de las Á reas de Reservas Territoriales del
	Estado de Guatemala) 및 그 개정 제5조
유보내용	<u>투자</u>
	과테말라는 만조선으로부터 해양을 따라 산정한 3킬로미터의
	띠 모양의 토지, 호숫가를 둘러싼 200미터의 토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제방 양측 100미터의 토지, 인구에 물을 제공하는
	우물 및 샘물의 원천으로부터 50미터의 토지 영역을 유보한다.
	다음의 유보는 제외된다.
	가. 도시 지역에 소재한 재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나. 1956년 3월 1일 전에 재산등록청(Registro General
	de la Propiedad)에 등록된 권리를 가진 부동산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앞의 두 호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다.

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과테말라 공화국 정치 헌법(Constituci ó 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제123조
	법령 제126-97호, 과테말라 영토보호구역 규제법(Ley
	Reguladora de las Á reas de Reservas Territoriales del
	Estado de Guatemala) 및 그 개정 제5조
유보내용	<u>투자</u>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획득한 과테말라인, 그리고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획득한 과테말라인이 100퍼센트를 소유한
	기업만이 국경에서 15킬로미터 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국민은 1956년 3월 1일 전에 재산등록청
	(Registro General de la Propiedad)에 권리가 등록된
	15킬로미터 지역 내의 도시 부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과테말라만이 과테말라 영토보호구역 내 소재한 부동산을
	자연인 또는 법인에 임대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과테말라에서
	적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5.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2-70호, 과테말라 상법(C ó digo de Comercio de
	Guatemala) 및 그 개정 제215조
유보내용	<u>투자</u>
	외국법에 따라 구성되고 과테말라에 설립된 모든 형태의
	기업은 과테말라에서의 기업 운영을 위하여 지정된 액수의
	자본을 할당해야 하고 제3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채권을 미화
	5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테말라 케찰로 설정해야
	하며, 그 채권은 그 기업이 과테말라에서 운영되는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권에 대한 요건은 외국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이 과테말라에 설립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는 외국 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만 적용된다.

6. 분야	임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과테말라 공화국 정치 헌법(Constituci ó 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제126조
유보내용	<u>투자</u>
	모든 산림자원의 개발 및 그 재생은 과테말라인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독점적으로 해당된다.

7.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공증인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과테말라 공화국 정치 헌법(Constituci ó 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제145조
	법령 제314호, 공증법(C ó digo de Notariado) 및 그 개정
	제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증인으로 활동하려는 개인은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과테말라에 거주하고 있는 과테말라인이어야 한다.
	또한 출생에 의하여 중앙아메리카연방공화국을 구성했던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과테말라에 주소를 취득하고
	과테말라인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한 경우, 과테말라 출신의 과테말라인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그들은 조약들 또는 중앙아메리카 협정들에 확립된
	규정과 무관하게, 그들의 출신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8.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2-70호, 과테말라 상법(C ó digo de Comercio de
	Guatemala) 및 그 개정 제21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활동을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학 학위, 자격 또는 졸업 증서를 요구하는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의 운영은 금지된다. 외국 회사는 외국에서 구성된 회사로 양해된다.

9. 분야	공연 예술
하위분야	쇼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574호, 대중공연법(Ley de Espect á culos P ú blicos)
	및 그 개정 제36조, 제37조 및 제49조
	문화체육부(Ministerio de Cultura y Deportes) 장관
	합의문(Acuerdo Ministerial) 제1106-2008호 제2조 및
	제4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 국민 또는 외국인인 개인 예술가나 예술 단체가 영리
	또는 자선 목적으로 과테말라에서 공연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인 또는 회사는 최소 15일 전에 문화체육부 예술국
	공중공연과(Direcci ó n de Espect á culos P ú blicos de la
	Direcci ó n General de las Artes del Ministerio de Cultura
	y Deportes)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부는 과테말라와 서명한 협정에 따라 문화교류를
	위하여 조직된 외교 대표단 및 문화센터(Diplomatic
	Representations and Cultural Centers)의 후원을 받는 공연,
	비영리 그룹 또는 외국 예술가를 승인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영화 및 버라이어티 쇼로 구성된 혼성 공연에서,
	배역, 일정 및 계약 상황상 허용되는 경우 과테말라인에게
	특혜가 부여될 것이다.

관광 서비스
관광 가이드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시장접근(제10.4조)
중앙
과테말라 관광청[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INGUAT)] 합의 제187-2007-D호, 관광 가이드
등록 및 운영 규정(Regulaciones para Inscripci ó n y
Funcionamiento de Guías Turísticas) 및 그 개정 제3조 및
제7조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 관광청(INGUAT)이 적법하게 승인한 해당 인정을
가진 인만이 관광객 가이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 관광객 가이드가 되려는 인은 과테말라인일 것이
요구된다.
일반, 전문 또는 특정 자격을 갖춘 현지 관광객 가이드로
활동하려는 인은 과테말라 거주자일 것이 요구된다.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과테말라인 또는 과테말라
거주자인 외국 국민만이 과테말라에서 관광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1.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관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결의 제223-2008호(COMIECO-XLIX) 제22조를 통하여
	경제통합각료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de Integraci ó n
	Econ ó mica)가 승인한 중미단일관세법[C ó 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
	결의 제224-2008호(COMIECO-XLIX) 제76조를 통하여
	경제통합각료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de Integraci ó n
	Econ ó mica)가 승인한 중미단일관세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l C ó 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RECAUCA)]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로 승인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자연인은 CAUCA
	서명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인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통관대행기관으로서 승인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법인은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12. 분야	건설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중미경제통합기본조약(Tratado General de Integraci ó n
	Econ ó mica Centroamericana) 제1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체약국은 중미 지역의 경제적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교량, 댐, 관개 시스템, 전기, 주택 및 그 밖의 공사에
	참여하는 다른 체약국의 기업에 국내 회사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13. 분야	여객 운송 및 도로 화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253호, 운송법(Ley de Transportes) 및 그 개정
	제4조
	중미경제통합기본조약 의정서(Protocolo al Tratado General
	de Integraci ó n Econ ó mica Centroamericana) 제15조 및
	제28조
	정부 합의 제135-94호, 화물운송 서비스 규정(Acuerdo
	Gubernativo No. 135-94 Reglamento del Servicio de
	Transportes de Equipos de Carga) 및 그 개정 제3조, 제9조
	및 제10조
	정부 합의 제379-2010호, 차량 및 그 결합의 중량 및 부피의
	통제에 관한 규정 (Acuerdo Gubernativo No. 379-2010
	Reglamento para el Control de Pesos y Dimensiones de
	Vehículos Automotores y sus Combinaciones) 및 그 개정
	제8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 국민과 외국인 모두,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 및 화물
	대중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번호판 또는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은 국가 영역 내 서로 다른 목적지 간
	여객 및 상용 화물을 운송할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금지의 예외는 다른 국가에 임시로 입국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국가들 중 하나를 목적지로 하는 중미 국가에
	등록된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에 적용된다.

14. 분야	여객 및 화물 운송
하위분야	여객 및 화물 육상운송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에 관한 중미 다자조약(Tratado
	Multilateral de Libre Comercio e Integraci ó n Econ ó mica
	Centroamericana) 제1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체약국들 중 하나에 등록된 지상차량은 다른 국가 영역에서의
	임시 체류 동안, 방문한 국가에 등록된 지상차량과 동일한
	대우를 향유한다.
	중미의 지정된 국가에서 여객 및 상품의 차량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명국과 관련 있는 회사는 다른 국가 영역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체약국들 간 연안운송의
	허용은 금지된다.

15. 분야	운송
하위분야	화물 육상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경제통합 및 지역개발 담당 각료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Responsables de la Integración Económica y Desarrollo
	Regional)가 승인한 결의 제65-2001호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파나마 간 국제 육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호혜 대우 및 비차별
	대우를 위하여 메커니즘이 수립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파나마에서 중미 국가로 그리고 중미 국가에서
	파나마로 이동하는 육상운송 화물 상품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운송할 자유, 그리고
	나. 운송할 자유는, 원산지 국가 또는 목적지 국가에
	무관하게 운송을 위한 고용에서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국가 영역에서도 모든 국가의 운송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16. 분야	우편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과테말라 공화국 대통령령 제650호, 과테말라 공화국
	우편법(C ó digo Postal de la Rep ú blica de Guatemala) 및 그
	개정 제41조
	정부 합의 제289-89호, 개인이 제공하는 우편물의 대중 운송
	및 배달 서비스에 관한 규정(Acuerdo Gubernativo No. 289-
	89, Reglamento para el Servicio Público de Transporte y
	Entrega de Correspondencia Postal Prestado por
	Particulares) 및 그 개정 제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어떠한 기업, 회사 또는 개인도 행정부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명시적으로 양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 및 전보를 수단으로
	하는 통신에 관한 우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통신인프라주택부(Ministerio de Comunicaciones,
	Infraestructura y Vivienda)는, 「과테말라 공화국 우편법」
	및 「개인이 제공하는 우편물의 대중 운송 및 배달 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수립된 요건에도 불구하고, 우편 통신을 위한
	운송 및 배송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개인에게 양허를 부여할
	수 있다.

부속서 II 과테말라의 유보목록

주해

- 1. 이 부속서의 과테말라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과테말라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을 규정한다.
 -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4조(시장접근)
 - 라. 제10.5조(현지주재)
 -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제2항(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 3. 제9.13조제2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한국에 대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과테말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
	라. 철도운송
	기, 근그 년 6

2. 분야	해상운송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야	취약 소수 집단 및 원주민 관련 사안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 집단 및
	원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분야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공중질서법 집행 및 사회 재적응 공급 서비스,
	그리고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의 한도에서 그
	서비스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험 및 소득 보장, 사회 보장 서비스,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아동 보건 및 지원

5. 분야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소규모 전통방식의 어업과 관련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전문직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과테말라는 「대학 전문직 수행 및 대학 연구 인정에 관한
	협정(Convenio sobre el Ejercicio de Profesiones
	Universitarias y Reconocimiento de Estudios
	Universitarios)」에 따라 획득한 권리 및 의무를 재차
	표명한다.

7. 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도로 상품운송 서비스 분야의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통신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공중통신 서비스의 설치, 운영 및 이용을 위한
	양허의 부여와 관련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문화 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시청각 협력 협정을 포함하여 문화 산업에 관한
	기존의 또는 미래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 인(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특혜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0. 분야	수공예품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과테말라산 수공예품으로 확인되는 수공예품의
	디자인, 유통, 소매 또는 전시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행요건은 모든 경우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과 양립한다.

11. 분야	에너지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무기 및 폭발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무기 및 폭발물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분야	환경 서비스 - 음용수 처리 및 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폐기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폐기, 위생 및 유사
	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14.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방송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사업 서비스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유전적 개량 및 인공수정을 포함한 농업, 임업,
	어업, 수렵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7. 분야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인간 보건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인간 보건 서비스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에 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9. 분야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u>
	과테말라는 비도시 지역 관광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과테말라는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과테말라는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에 대하여,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고,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부속서 III 과테말라의 유보목록

주해

- 1. 부속서 III의 과테말라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서 기술된 의무에 대한 과테말라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않는 과테말라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과테말라가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또는 제11.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
-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에 따라, 기재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 바.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다.

- 4. 제1절의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서, 비합치 조치 목록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가 취해진 금융서비스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또는 금융서비스 장 부속서의 구체적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범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범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 6. 과테말라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대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해진 그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 7. 부록 III-가는 당사국들이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1.10조(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특정조치를 언급한다.

두주

- 1.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제1절과 제2절에서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 2. 제11.4조에 대한 과테말라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테말라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되다.¹

¹ 예를 들어, 유한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주식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및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는 과테말라에서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회사는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이 두 주는 그 자체로 다른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표사무소 및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부록 III-가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1.1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제11.10조(예외)에 따라, 과테말라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

제11.10조(예외)와 무관하게, 과테말라가 한국의 부록 III-가에 규정된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조치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자국의 법규에서 채택 또는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도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불합치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 법령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불합치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제1절

1.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9-2002호 및 그 규정, 2002년 4월 29일 승인, 은행
	및 금융그룹법(Ley de Bancos y Grupos Financieros) 및 그
	개정 제6조, 제7조, 제18조, 제26조, 제64조 및 제65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은 과테말라에서 다음을 통하여 운영될 수 있다.
	가. 과테말라에 지점 설립, 그리고
	나. 국가 영역에서의 사업 진흥 및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사무소의 등록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은 관리위원회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나,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한 명 이상의 관리자를 둘
	것이다.
	외국법에 따라 조직된 외국 국민 및 기업(은행을 포함한다)은
	주식회사(Sociedad An ó nima)의 형태로 과테말라에 은행을
	설립할 수도 있다.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은 신용, 시장 및 그 밖의 위험에 대한
	노출과 관련된 순자산(주주자본)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 금액은
	금융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가 발행한 일반 규정에
	따라, 위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자산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10퍼센트 미만이 될 수 없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9-2002호, 2002년 4월 29일 승인, 은행 및
	금융그룹법(Ley de Bancos y Grupos Financieros) 및 그
	개정 제70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의 지점이 자본 부족을 겪는 경우,
	금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은 이 정보를
	본점에 전달할 것이며, 본점은 30일 내에 그 자본 부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립 은행은 해당 자본 부족을
	시정하기 위하여 더 긴 시간을 가질 것이며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25-79호, 1979년 5월 3일 승인, 과테말라
	국립주택담보대출은행 기본법(Ley Org á nica del Cr é dito
	Hipotecario Nacional de Guatemala) 및 그 개정
	법령 제46-72호, 1972년 7월 20일 승인, 국립금융공사
	기본법(Ley Org á nica de la Corporaci ó n Financiera
	Nacional) 및 그 개정
	법령 제1448호, 1961년 6월 7일 승인,
	담보대출보증보험진흥기관법(Ley del Instituto de
	Fomento de Hipotecas Aseguradas) 및 그 개정
유보내용	정부는 국영 금융기관의 운영을 규제하는 특정 법에 따라,
	그러한 금융기관에만 특정 보증 및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법률 제208호, 1964년 5월 12일 승인,
	민간금융회사법(Ley de Sociedades Financieras Privadas)
	및 그 개정 제1조 및 제2조
유보내용	과테말라에서 영업하기 위하여, 은행기관이면서 투자은행
	운영에서 전문화된 금융중개회사로 활동하는 민간 금융회사는
	주식회사(Sociedad An ó 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25-2010호 및 그 규정, 2010년 7월 14일 승인,
	보험활동법(Ley de la Actividad Aseguradora) 및 그 개정
	제6조, 제7조, 제19조, 제60조 및 제61조
유보내용	외국 보험사 또는 외국 재보험사는 과테말라에서의 지점
	구성을 통하여 과테말라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가 구성에 대한 승인을
	부여할 것이다.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는, 민간 또는 국영인지에 관계없이,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하여 과테말라의
	일반 법령에 따른 주식회사(Sociedad An ó nima)로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하며, 그 주식은 현지인 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승인된 개인 또는
	법인만이 과테말라 영역 내에서 보험을 제의, 홍보 및
	판매하거나 그 밖의 보험중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25-2010호, 2010년 7월 14일 승인, 보험활동법(Ley
	de la Actividad Aseguradora) 및 그 개정 제68조
유보내용	외국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의 지점이 자본 또는 투자 부족을
	겪는 경우, 금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은 이
	정보를 본점에 전달할 것이며, 본점은 30일 내에 그 자본
	부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영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는 해당
	자본 부족을 시정하기 위하여 더 긴 기간을 가질 것이며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과테말라는 과테말라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 회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과테말라에 설립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과테말라는 과테말라 국민 또는 외국인 계리사가 개입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금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승인한 개인 또는 법인만이 계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9.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제10.2조 및 제11.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제10.3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및 제11.8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과테말라는 상호주의 체계 내에서, 한국에 본점이
	설립되어 있고 과테말라에서의 회사 운영을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은행 및 보험사의 법적 대리인의 국적에 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